▣ 제2부 국제규정 제1장 국제스포츠규정

2017 FIA ISC 규정	2018 FIA ISC 규정 개정
제2부 / 제1장 국제스포츠규정(International Sporting Code)	
제2.3조 국내경기 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KAR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 한다. … 2.3.6 해외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2.3.6.a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일부라면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 포인트를 얻을 자격이 없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야 한다.	**제2.3조 국내경기** 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ASN(KAR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 한다. … 2.3.6 해외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2.3.6.a.i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일부라면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 포인트를 얻을 자격이 없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야 한다. 2.3.6.a.ii 만약 대회주최자가 -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경쟁자에게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포인트를 허가하거나, -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경쟁자에게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포인트 지급 및 순위 지정을 고려하거나 한다면 이 대회주최자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해당 국내대회를 담당하는

2.3.6.a.i FIA 존(Zone) 가이드라인에 따른 FIA 존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그 존 내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정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3.6.a.ii FIA F4 챔피언십에 있어서, 한 나라의 서킷 상황이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 에 입증한 경우,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에서 열리는 F4 대회에 자국의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3.8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팀과 선수는 KARA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 2.3.8.a 위의 허가는 KARA가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3.8.b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KARA에이 사실이 통보되면 주최자는 벌금 처분을 받으며, 그 액수는 KARA의 재량에 맡긴다.	ASN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ASN의 재량에 의해 벌금이나 다른 페널티를 받게 된다. 2.3.6.a.ii FIA 존(Zone) 가이드라인에 따른 FIA 존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그 존 내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정해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3.6.a.iv FIA F4 챔피언십에 있어서, 한 나라의 서킷 상황이 경기를 개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 에 입증한 경우,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에서 열리는 F4 대회에 자국의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3.6.a.i조와 2.3.6.a.ii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2.3.8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팀과 선수는 ASN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 2.3.8.a 위의 허가는 ASN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3.8.b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ASN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주최자는 벌금 처분 또는 다른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ASN에 의해 결정된다.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리며 외국 경기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린다.

참가자의 경우에는 항소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의 코스가 여러 나라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의 주최자는 먼저 소속 ASN을 통해서 통과하는 각 ASN에게서 그리고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나라에서는 FIA에게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 코스가 여러 국가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 주최자의 ASN은 먼저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하기 이전에 해당 영토의 각 ASN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FIA에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서는 FIA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자동차 **제10.2조 위험한 구조**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제외시킬 수 있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10.6.2 KARA는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10.6.3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0조 자동차** **제10.2조 위험한 구조**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실격 시킬 수 있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10.6.2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동차의 광고가 정치적, 종교적이거나 또는 FIA의 이익에 해로운 것을 부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0.6.3.a ASN은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10.6.3.b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 11.9.1 심사위원은 FIA 적절한 국제스포츠규정(ISC) 그리고 국내 및	**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 11.9.1 심사위원은 FIA 적절한 국제스포츠규정(ISC) 그리고 국내 및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제11.9.2.s 조 와 제14.1조 규정의 조건으로 경기 체제 내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제11.9.3.t조 와 제14.1조 규정의 조건으로 경기 체제 내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11.9.2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임무 체제 내에서,	11.9.2.a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임무 체제 내에서,~~ 11.9.2.b 심사위원은 규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이 경기의 범위 밖에서도 발생될 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경기에서의 위반 사항이 즉시 발견 될 경우에 가능하다. 11.9.3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9.2.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	11.9.3.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
11.9.2.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1.9.3.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1.9.2.c 히트제인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	11.9.3.c 히트경기의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
11.9.2.d 동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	11.9.3.d 동률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
11.9.2.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사실 판정을 하여 기각할 수 있다.	11.9.3.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사실 판정을 하여 기각할 수 있다.
11.9.2.f 벌칙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9.3.f 벌칙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9.2.g 실격 처분을 선언할 수 있다. 11.9.2.h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9.2.i 위험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1.9.2.j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한 경기에서 또는 전체 경기 동안 제외시킬 수 있다. 11.9.2.k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지정 장소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2.l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11.9.2.m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11.9.2.n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11.9.3.g 실격 처분을 선언할 수 있다. 11.9.3.h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9.3.i 위험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1.9.3.j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한 경기에서 또는 전체 경기 동안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11.9.3.k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지정 장소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3.l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11.9.3.m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11.9.3.n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11.9.2.o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적 또는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9.2.p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1.9.2.q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2.r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1.9.2.s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KARA는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9.2.t 심사위원회는 판정을 위해 비디오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1.9.3.o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적 또는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9.3.p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1.9.3.q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3.r FIA(또는 ASN)의 요청에 따라, 검사할 드라이버 수를 정하여, 규정에 의한 음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1.9.3.s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1.9.3.t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ASN은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9.3.u 심사위원회는 판정을 위해 비디오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 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14.2.a 경기 전에는 KARA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	**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 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14.2.a 해당 스포팅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전에는 ASN이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
제12.2조 벌칙 12.2.1 국제스포츠규정, 국내규정 또는 그 부칙, 또는 특별규정에 대해서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출전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12.2.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대회 심사위원회나 KARA가 부과한다. 12.2.3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가 일으킨 안전, 도덕 기준, 또는 부정 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항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같은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같은 참가자를 자격 상실 시키는 사유가 된다.	**제12.2조 벌칙** 12.2.1 국제스포츠규정, 국내규정 또는 그 부칙, 또는 특별규정에 대해서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출전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 12.2.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대회 심사위원회나 ASN이 부과한다. 12.2.3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 참가자가 일으킨 안전(음주검사에 적용되는 규정 위반), 도덕 기준, 또는 부정 참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위원회의 결정은 항의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같은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같은 참가자를 자격 상실 시키는 사유가 된다.
제12.3조 벌칙의 범위 12.3.4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제12.3조 벌칙의 범위** 12.3.4 증거를 검토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table>
<tr><td>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td><td>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td></tr>
<tr><td>제12.7조 벌금 납부 기한
12.7.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 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

12.7.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12.7.3 벌금으로 얻은 수익은 KARA를 통해 챔피언십 경기의 프로모션과 조직 운영에 쓰여야 한다. 국내 벌금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12.7.4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FIA에 내야 한다. 국내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그리고 시리즈 경기 도중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KARA에 내야 한다.</td><td>제12.7조 벌금 납부
12.7.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 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

12.7.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12.7.3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되어야 한다.
<table>
<tr><th>경기 동안 발생된 벌금</th><th>납부처</th></tr>
<tr><td>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td><td>FIA</td></tr>
<tr><td>국제 시리즈 경기</td><td>국제 시리즈의 모국(Parent) ASN</td></tr>
<tr><td>여러 나라의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td><td>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재된 ASN</td></tr>
<tr><td>지역 챔피언십 경기</td><td>지역 경기를 조직한 ASN</td></tr>
<tr><td>자국 챔피언십 경기</td><td>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td></tr>
<tr><td>자국 경기</td><td>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td></tr>
</table></td></tr>
<tr><td>제13.2조 항의의 제출
13.2.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td><td>제13조 항의
13.2.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td></tr>
</table>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또는 부정
- 차량 규정의 불이행
- 경기 종료 후 순위

13.3 항의 시간 제한

항의	시간 제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 공식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코스의 길이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전까지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나 부정, 자동차 규정 불이행에 대한 항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 발표 후 경기 스타트 30분전 까지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 발표 후 30분전 까지

제13.4조 항의의 제출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또는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되는 사항
- 경기 종료 후 순위

13.3 항의 시간 제한

항의	시간 제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 공식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코스의 길이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이내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이내
경기 중 발생하는 의심되는 오류나 부정, 경기 규정 위반	심사위원회에서 30분 이내에 항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스포츠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잠정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
차량 규정 위반에 대한 의심되는 항의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제13.4조 항의의 제출

13.4.1 항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각 항의는 명확해야 한다. - 관련 규정들 - 항의 당사자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여러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각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13.4.1 항의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들 - 항의 당사자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여러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각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드라이버가 여러 차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검토 권한 14.1 만약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위원회 (이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FIA가 지명한 사람들을) 를 일정 날짜에 설명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고,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연다. 14.2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14.3 항소가 재검토될 수 있는 기간은 그 결과가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A 연간 시상식	**14 재검토 권한** 14.1.1 만약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에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해당 경기 관계자는 재검토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FIA의해 지명된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합의된 날짜(인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에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여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그전에 제기된 사실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4.1.2 관련 당사자들은 그들의 심리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4.2 심사위원회 본래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래 결정된 판단에 대한 중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14.3 심사위원회는 관련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날짜로부터 4일 (근무일 기준) 전에 만료되며 이 기간 동안에 재검토되는 결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4.4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의 이어지는 조항에 따라서 관련 당사자로 국한된다. 14.5 최초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건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6 국제 항소재판소는 자체 발의 또는 FIA 회장 혹은 관련된 그리고/또는 이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당사자 중 하나가 제기한 재검토 항소에 따라서 판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어떠한 정보(구성요소) 존재의 여부는 국내항소재판소 또는 국제항소재판소에 앞서 항소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14.4.1 최종 결과 발표 일로부터 14일이 이내 경기 재검토 되어야 한다. 14.4.2 더욱이,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내 에서는 FIA prize-giving 시상식 일자로부터 최소 4일 전부터는 경기 재검토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없다. 14.5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 제12.2.4조를 침해 없이, 국제스포츠규정 제15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국한된다. 14.6 최최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건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7 국제 항소재판소는 자체 발의 또는 FIA 회장 혹은 관련된 그리고/또는 이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당사자 중 하나가 제기한 재검토 청원서에 따라서 판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제15조 항소

제15.1조 관할권

15.1.1 각 ASN은 국내 항소재판소를 통해서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해서 그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들만을 범위로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소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최종 재판소를 구성한다.

15.1.2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외국 국적으로 제12.2.1조의 첫 문단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국내 항소재판소는 그 결정에 대해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소가 된다.

15.1.3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스포츠 재판소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그 경기 등록을 신청했던 ASN의 판소다. 단,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다.

15.1.4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를 위한 권한 있는 스포츠 재판소는 그 국제 시리즈를 요청 승인한 모국 ASN 소속이어야 한다. 단, FIA 재판 및 징계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곧바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다.

15.1.5 ISC 2.4.4.c에 따라서 국내 영토 밖에서 국내 챔피언십 경기의 틀 안에서 제기된 항소를 위한 권한이 있는 스포츠 재판소는 그 국내 챔피언십을 관리하는 ASN이 조직한다.

제15조 항소

제15.1조 관할권

경기별 구분	담당 항소 재판소
15.1.1.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ISC 2.3.7.b, 2.4.4 와 2.4.5)	ASN의 국내 항소 재판소(최종)
15.1.2.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 (ISC 7.1)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한 ASN의 항소 재판소
15.1.3. 존(Zone) 챔피언십	해당 국가 ASN의 항소 재판소
15.1.4. 국제 시리즈	국제 시리즈의 모국의 ASN 항소 재판소
15.1.5. FIA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해당 국가 ASN의 국내 항소 재판소
15.1.6 FIA 챔피언십 또는 월드컵	국제 항소 재판소 (FIA의 사법 및 징계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국제항소법원)은 국제스포츠코드(ISC) 15.1.2부터 15.1.5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항소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FIA 사법 및 징계 규정).

15.1.6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나와 있는 권한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 항소재판소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15.1.7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스포츠 중재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15.1.7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스포츠 중재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제15.3조 국내 항소 재판소 전의 항소 절차 15.3.1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 참가자는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ASN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 ISC 2.4.4.c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3.2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5.3.3 KARA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제15.3조 국내 항소 재판소 전의 항소 절차** 15.3.1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 참가자는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ASN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 ISC 2.4.4.c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3.2.a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5.3.2.b 위의 11.9.2.s3 또는 14.1.4에 의거 한 결정의 경우 또는 심사위원이 1시간의 기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의사에 대한 통지에 다른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이 발표 된 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ASN에 이의 제기가능 기한 및 보증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연기될 수도 있다. 15.3.3 ASN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15.3.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5.3.5 KARA는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3.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15.3.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5.3.5 ASN은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3.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15.4조 국내 재판소 전의 항소 형식 15.4.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4.2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항소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 의해서 매년 결정된다. -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 ISC 2.4.4.c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4.3 이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15.4조 국내 재판소 전의 항소 형식** 15.4.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4.2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항소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 의해서 매년 결정된다. -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 ISC 2.4.4.c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4.3 상기 15.3.2.b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납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20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20.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국제 항소의 조건을 적용 받는,	**제20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20.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항소의 권리를 ISC 15.1 적용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받아,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제22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